

#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정관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호   | [ 제정 : 1998. 11. 3]   |
| 제2호   | [일부개정 : 1999. 3. 5]   |
| 제3호   | [일부개정 : 2000. 2. 24]  |
| 제4호   | [일부개정 : 2003. 3. 27]  |
| 제5호   | [일부개정 : 2006. 11. 22] |
| 제6호   | [전부개정 : 2007. 6. 8]   |
| 제9호   | [일부개정 : 2010. 7. 30]  |
| 제10호  | [일부개정 : 2011. 1. 17]  |
| 제11호  | [일부개정 : 2011. 4. 18]  |
| 제12호  | [일부개정 : 2012. 6. 21]  |
| 제32호  | [일부개정 : 2016. 12. 21] |
| 제33호  | [일부개정 : 2017. 10. 23] |
| 제44호  | [일부개정 : 2018. 10. 10] |
| 제46호  | [전부개정 : 2019. 10. 15] |
| 제68호  | [일부개정 : 2021. 11. 02] |
| 제74호  | [일부개정 : 2023. 3. 10]  |
| 제92호  | [일부개정 : 2024. 3. 22]  |
| 제102호 | [일부개정 : 2024. 10. 25] |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-1(명주동)에 두고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

수행한다.

1.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·보급
2. 향토사의 조사·연구와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발 및 개최
5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6.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발굴·보존 등 활동 지원
7.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
**제5조(수익사업)**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임원

**제6조(임원)**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
4. 감사 2인

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원(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)은 공개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·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제7조(임원추천위원회)**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단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이사장)**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② 이사장은 재단의 대표권을 가지며, 이사회 소집 및 이사회의 업무를

총괄한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조(상임이사)** ① 상임이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,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단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**제10조(이사)**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
2.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
3. 강릉문화재단 설립인의 후손 <신설 2023. 3. 10.>

③ 선임직 이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,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**제11조(감사)** ① 감사 2인은 당연직 감사 1인과 선임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감사는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, 선임직 감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재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감사
2.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
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

**제12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계산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「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」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해임)** ①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
② 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임원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임명할 수 없다.

제15조(임원의 보수)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3장 이사회

제16조(설치 및 구성) ① 재단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7조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재단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, 관리에 관한 사항
4.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6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조례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(회기 및 소집)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
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
3.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 요구할 때

③ 이사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,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

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의결 정족수)**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20조(서면결의)**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의결 제척사유)**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

**제22조(의사록)**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1명, 감사 1명이 기명·날인하여 재단의 이사회 담당팀에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**제23조(재산의 구분)** ① 재단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**제24조(재산의 관리)** 재단의 기본재산 및 수탁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회계연도)**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26조(경비의 충당)**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보조금, 위탁사업비, 기부금, 재단의 사업수입,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27조(잉여금의 처리)**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한다.

**제28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** ① 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·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강릉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**제29조(결산서의 제출)** ① 재단은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,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보고·검사·감사)**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시와 시의회가 보고·검사·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감사의 실시)**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정기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직제 및 구성인원

제32조(정원)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제를 두며 정원은 「직제 및 정원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3조(직제) 조직 및 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4조(직원 임면 등)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5조(공무원의 파견요구 등) 이사장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6조(자문기구)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기구를 두고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37조(수당의 지급 등) 제36조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칙

제38조(정관의 변경)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과 협의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9조(재단의 해산)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

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과 협의한 후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2.>

**제40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
**제41조(시행규정)**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재단 제규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릉시 주무부서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하고, 심의·의결한 사항을 주무부서에 승인받아 시행한다. <개정 2024. 3. 22.>

1. 「직제규정」
2. 「인사규정」
3. 「보수규정」
4. 「공무직 및 계약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」 <신설 2024. 3. 22.>
5. 「일반직 전환형 계약직 근로자 규정」 <신설 2024. 3. 22.>

**제42조(공고사항 및 방법)** 법령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·공고한다.

1.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
2. 전년도 결산서
3.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
4.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
5. 임원의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
6. 재단의 경영실적평가의 결과
7.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·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
8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<신설 2021. 11. 2.>
9. 그 밖에 이사장이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

**제43조(연차보고서 작성)** 재단은 효율적인 경영성과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연차보고서를 제작·배포하며,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이사장

이 정한다. <신설 2024. 3. 22.>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 <2024. 10. 25>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